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8.

발의자 : 박정하 · 최보윤 · 김상훈

박상웅 · 서일준 · 엄태영

정동만 · 이인선 · 박덕흠

한지아 · 신성범 · 김재섭

김용태 · 조은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,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.

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,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,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,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,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

세,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과세 등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의33, 제121조의34, 제121조의 35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33제1항 중 “2026년”을 “2031년”으로 한다.

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”을 “2031년”으로 한다.

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6년”을 “2031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1조의33(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기회발전특구에 <u>2026</u>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이하 이 조에서 “감면대상사업”이라 한다)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(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,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.</p> <p>② ~ ⑩ (생략)</p> <p>제121조의34(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① 수도권에서 3년(중소기업은 2년)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</p>	<p>제121조의33(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) ① ----- <u>2031</u>년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1조의34(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</p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